

제7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12. 13.(월) 09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「2.5GHz대역 WiBro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」에 관한 건 - (2010-74-302)

-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한국모바일인터넷(KMI)이 WiBro 사업허가를 재신청해 오에 따라 마련된 「2.5GHz대역 WiBro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(안)」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파수 할당계획 주요 내용
 - ①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: 2580~2620MHz, 40MHz폭
 - ② 이용기간 및 기술방식
 - (이용기간) 기존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의 이용기간을 부여
 - (기술방식) 3G WiBro 방식 또는 진화된 4G WiBro 방식
 - ③ 할당방법 및 할당대가
 - (할당방법) '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' 방법을 적용(전파법 제11조)
 - (할당대가)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 매출액의 1%를 일시에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%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
 - ④ 심사기준 및 할당시기
 - (심사기준) 지난 800/900MHz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(50점), 재정적 능력(25점), 기술적 능력(25점)으로 심사
 - (할당시기) 자본금 납입·법인설립등기 등 사업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사업허가를 받고,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

2) 「무선호출용 주파수할당계획(안)」에 관한 건 - (2010-74-303)

-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양방향 무선폭출 유희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, 무선데이터 통신의 틈새시장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「무선폭출용 주파수할당계획(안)」과 이에 따른 「주파수 할당공고안」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※ 양방향 무선폭출의 개념 : 과거 무선폭출(일명 '삐삐')은 수신전용 서비스였으나, 양방향 무선폭출은 단말기도 간단한 데이터 등을 송신(6.4kbps)할 수 있도록 발전된 서비스

○ 주파수 할당계획 주요 내용

① 할당대상 주파수 및 폭

- 300MHz대역 1MHz폭, 900MHz대역 0.5MHz폭

② 이용기간

- 무선호출 역무의 차기 재할당 시점인 '16. 6월말까지 부여

③ 할당방법

- '심사에 의한 할당' 방법을 적용(전파법 제12조)

④ 할당조건

- 기존 사업자가 할당받을 경우 현재 사용중인 0.6MHz폭은 '11. 6월말 이용기간 만료시 반납하는 조건

⑤ 할당대상 법인 선정

- 800/900MHz대역 이동통신 주파수할당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, 심사사항별 60점 이상, 총점 70점 이상을 받을 경우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

⑥ 주파수할당의 통보

- 기존사업자는 할당절차 완료 즉시, 신규사업자는 사업허가 및 주파수할당 절차 완료 즉시 주파수할당을 통보

3) 무선설비규칙 등 고시 개정(안)에 관한 건 - (2010-74-304)

-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확산추세에 따른 주파수 부족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고시 개정안(4건*)을 원안대로 의결함.

* 「무선설비규칙」

「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」

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」

「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·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」

○ 주요 내용

① 비면허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

① 57~64GHz 대역 무선기기

- WiFi와 같이 누구나 허가없이 TV, PC 등을 선 없이 연결하여 고속(1~8Gbps) 데이터 통신에 활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
- 현행 출력기준으로는 약 10m 정도만 이용 가능함에 따라, 서비스 범위를 20~30m까지 확대하기 위해 출력 상향(27dBm → 43dBm)

② UWB(Ultra Wide Band, 3.1~10.2GHz) 대역 무선기기

- 기존 무선국에 간섭을 주지 않는 잡음레벨 출력으로 고속(500Mbps)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기기로 간섭회피 기술 적용 의무 부여
- UWB 대역 중 4.2~4.8GHz 대역은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를 고려하여 '10년 6월말까지 간섭회피 기술 적용 의무를 유예한 바 있음
- 향후 ITU의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분배가 '16년에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간섭회피 기술적용을 '16년 12월말까지 유예
- 국내 산업체의 간섭회피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기준 완화(-81dBm/MHz → -61dBm)

③ DTV 중계용 무선기기

- 기 허가된 방송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허가 없이 난시청 해소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DTV소출력(10mW/MHz) 중계기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

② 기타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

① 인말셋(INMARSAT)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기기

- '10.7월 인말셋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위성휴대통신(GMPCS)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, 국내 서비스를 위해 위성휴대통신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

② 무선설비 낙뢰보호시설 안전기준 개선

-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낙뢰보호시설의 설치방법을 한국산업(KS) 규격 및 관련 표준에서 권고하는 방식 중 시설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

③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(DMB)용 무선설비

- 지상파 DMB를 통해 지역별 재난방송 전달이 가능하고, 팝업형태로 재난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송신규격을 기술 기준에 마련

4) (재)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- (2010-74-305)

○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14조제1항에 의거, (재)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승인 신청에 대해 원안대로 (재)극동방송이 미국 극동방송으로부터 2010년도에 미화 70만 달러를 추가로 출연 받는 것을 승인하기로 의결함.

※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으나,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교육·체육·종교·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음.

○ 주요 내용

① 신청인 : 재단법인 극동방송(대표자 : 김장환)

② 출연인 : 미국 극동방송(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- USA)

③ 출연 예정 금액 : US \$700,000(약 8억원)

④ 출연목적

- 2010년 8월 신규로 허가받은 극동대구FM 방송국 설립을 위한 방송장비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

5)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관한 건 - (2010-74-306)

○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위원회 내부 토론과 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「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」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①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: 원안대로 의결

② 정책 추진방향

① 기존 홈쇼핑 PP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선 : 원안대로 의결

- 홈쇼핑 PP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고내용을 구체화 하고 이행 여부를 재승인 심사 시 적극 반영

-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, 납품업체 민원 처리기구 마련, 방송법령 개정 검토 등

②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: 원안대로 의결

- 중소기업 지원, 시청자·소비자 복지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합법·합리적이고 공정·공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

③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강화 : 수정의결

- 홈쇼핑 PP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및 판매수수료 인하 등 합리적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강화

※ **수수료 개선**, 표준거래계약서 도입, 홈쇼핑 맞춤형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·추진(수정내용 : 당초안에 '수수료 개선' 추가)

③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방안

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성격

- 사업자 수 : 제1안으로 의결

·1개 사업자를 선정

- 채널 운영 : 원안대로 의결

·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를 '중소기업'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정의하고, 방송법 상 전문편성비율 규정을 고려, 중소기업제품을 80% 이상 편성

※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여 80% 미만 제출 시 과락 처리 (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 적용)

- 채널 소유 : 원안대로 의결

·최대주주의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되,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거나 대기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

※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기존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과락처리 (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 적용)

·또한 기존 홈쇼핑 PP의 지분참여를 배제

※ 기존 홈쇼핑 PP(특수관계자 포함)의 지분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배제방안은 「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」 의결 시 결정

②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: 원안대로 의결

- 심사기준 구성 : 심사사항 5개, 심사항목 20개로 구성

·(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) ①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계획, ② 시청자소비자 권익실현방안,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, ④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, ⑤ 지역·사회·문화적 기여도

·(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)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·제작계획, ②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, ③ 채널 확보계획

·(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) ① 사업추진계획, ②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, ③ 납입자본금 규모, ④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, ⑤ 사업성 분석, ⑥ 경영의 투명성·효율성

·(재정 및 기술적 능력) ① 재정적 능력, ② 자금출자 능력, ③ 기술적 능력

·(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) ① 방송·콘텐츠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, ② 유통 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, ③ 출연금

- 심사사항별 배점

·기존 '01년 홈쇼핑 PP 사례를 참고하되, 중소기업 전용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 사항별 배점 비중을 조정

·주주 구성의 적정성, 거래관계 개선,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한 '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가능성'을 강조

<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심사사항 배점(단위 : %) >

심 사 사 항	배 점
○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가능성	35
○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	20
○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	25
○ 재정 및 기술적 능력	10
○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	10

③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

-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

·사업자 수를 1개로 의결함에 따라, 동일인이 복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허용

- 승인 최저점수 설정 : 원안대로 의결

·전체 총점의 70% 이상, 핵심 심사항목별 총점의 60%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하고,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

※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심사항목은 「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」 의결 시 결정

- 납입자본금 : 원안대로 의결

· '중소기업 전용'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진 홈쇼핑 PP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1,000억 원을 설정

· 심사방안으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점의 100%, 충족 못할 경우 0점 처리(계량 절대평가)

※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락처리(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 적용)

- 출연금 : 원안대로 의결

· 최소 출연금 규모는 50억 원으로 설정

· 심사방안으로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점의 100%, 충족 못할 경우 0점 처리(계량 절대평가)

※ 출연금 외에 공익적 도입취지에 맞도록 홈쇼핑 관련 중소기업 제품 유통 및 방송·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계획을 추가로 평가

4] 향후 일정

○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세부 심사기준 보고 및 의결('10. 12 ~ '11. 1월 중)

○ 승인 신청 공고 및 신청 요령 설명회('10. 12 ~ '11. 1월 중)

○ 심사계획 의결('11. 1 ~ 2월 중)

○ 심사위원회 운영 및 선정 결과 의결('11. 1 ~ 2월 중)

※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사. 보고사항

1)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(안)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제정안을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 받음.

○ 주요 내용

1]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정함

①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

- 현행 분담금 징수율보다 지역방송은 약 11% 수준(3.37%→3.00%), 라디오방송은 약 13% 수준 인하 (2.87%→2.50%)

② 지상파DMB사업자 : 차기 고시 시점까지 유예

③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(TV) : 12%→13%로 8.33% 인상

④ 보도전문·종합편성 PP 및 IPTV 사업자 : '11년 고시

<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>

구분			징수율(%)		비고
매체	방송사업자	부과기준	현행	개정	
지상파	KBS·EBS	방송광고 매출액	3.17	현행	○ 현행 유지
	MBC·SBS		4.75		
	지역 MBC		3.37	3.00	○ 기재부·국경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반영 (10% 수준 인하)
	지역 민방		3.37	3.00	
	라디오방송		2.87	2.50	
지상파 DMB	KBS	방송광고 매출액	-	유예	○ 현행 유지
	MBC·SBS		-	유예	
	수도권 (단독 3사)		-	유예	
	지역DMB		-	유예	
종합 유선	(사업자수) 2	방송서비스 매출액 25억원 이하	1.00	현행	○ 현행 유지
	8	25억원 ~ 50억원	1.30		
	24	50억원 ~ 100억원	1.80		
	29	100억원 ~ 200억원	2.30		
	37	200억원 초과	2.80		
위성	일반위성	방송서비스 매출액	1.00	현행	○ 현행 유지
	위성DMB		0.00		
홈쇼핑	텔레비전	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	12.00	13.00	○ 사업규모·수익성을 반영
	데이터		10.00	현행	○ 현행 유지
보도전문채널		방송광고 매출액	-	-	○ '11년 고시 ('12년부터 징수)
종합편성채널			-	-	○ 사업자 선정 후 검토
IPTV		방송서비스 매출액	-	-	○ '11년 고시 (유예기간 종료 후 징수)

② 분담금 징수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설(국민권익위 권고사항)

- ① 방송사업자에 부과한 분담금이 과·오 산정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
- ②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

③ 다른 규칙 및 고시의 폐지

- ① 「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」 및 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」 등 5개 방송사업자별 징수율 고시를 폐지

2)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안의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조항이 '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 제정안」을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 받음.

○ 주요 내용

- 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운영 및 관리기관(한국전파진흥원)에의 사무위탁 범위 등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
 -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그 외의 사항은 심의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
 - 분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·징수 등 사무위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, 업무수행의 세부방법을 규정함
 - 관리기관은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,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
- ② 지출사업의 이월, 결손처분 사유 등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
 -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, 기금 지출사업의 이월에 대한 기준을 정함
 -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결손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
-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별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 및 집행잔액 반납 절차 등을 규정함

- 기금사업 수행기관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
- 출연사업, 위탁사업, 용자사업, 출자 및 투자사업, 보조사업 등 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행방법 및 예산비목 편성의 기준을 정함
- 사업수행 단계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반납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

④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의 제·개정 및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담당 국장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3) 「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」(고시) 및 부속 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시행으로 '11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R&D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, 사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동 고시 및 부속 규정 제정안을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 받음.

○ 주요 내용

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, 과학기술기본법,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등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관리규정을 수용

- (추진 체계) PM(Project Manager : 민간전문가)의 역할, R&D 사업의 심의·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·사업심의위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- (추진 절차) 과제 기획·수행기관 선정 → 사업의 공고·평가·과제 관리 → 결과물의 활용·기술 이전 등 R&D 사업 절차

- (추진 방법) 사업비의 편성·집행·정산, 협약의 체결 등 전담기관의 역할과 사업 수행 방법

② 기술료 징수·관리, 연구 보안, 연구윤리 준수 등 R&D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부속규정 및 지침(훈령)으로 위임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○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. 12. 22(수),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1:05)